

##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
전문개정	2001. 6. 1	규칙 제 790호
개정	2005. 7. 27	규칙 제 861호
전문개정	2008. 5. 6	규칙 제 936호
일부개정	2011. 4. 15	규칙 제1010호
일부개정	2014. 10. 17	규칙 제109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5. 12. 11	규칙 제1120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6. 6. 22	규칙 제1128호
일부개정	2019. 12. 20	규칙 제1222호
일부개정	2023. 11. 29	규칙 제129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0]

제2조(신고) 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 12. 20>

1.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·중지·폐지·재사용 신고 : 별지 제1호 서식
2.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: 별지 제2호 서식
3.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: 별지 제3호 서식
4.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: 별지 제4호 서식

제3조(일시사용 신고)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준공검사 등)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배수설비의 신청)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5>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·납부장소·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20>

제6조(공사신청의 취하)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.

제7조(공사시행자 지정)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4. 10. 17>

제8조(원인자부담금 부과)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4. 15, 2019. 12. 20>

1.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
2.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·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

제9조(감면)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6. 22, 2019. 12. 20, 2023. 11. 29>

1. 전액감면 :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2. 10세제곱미터감면 :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자

3.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: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

②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22>

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6. 22>

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22>

[전문개정 2011. 4. 15]

부칙 <2008. 5. 6 규칙 제936호 전문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1. 4. 15 규칙 제101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0. 17 규칙 제109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5. 12. 11 규칙 제1120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6. 22 규칙 제112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19. 12. 20 규칙 제1222호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1. 29 규칙 제129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공공하수도의 사용(개시·중지·폐지·재사용) 신고서						처리기간	
						3일	
신청자	주 소			상 호			
	성 명 (대표자)			생년월일	전 화		
신고 내용	사용수	지하수, 하천수, 기타 ( )					
	배출량	생활하수	m³/일	사업장폐수	m³/일		
	양수시설	자동모터펌프			기 타		
		규 격	HP		설치대수	대	
		설치대수	대		구 경	mm	
		관 구 경	mm		양수능력	m³/일	
		양수능력	m³/일		기 타		
상수도	수전번호	업 종	월평균사용량		특기사항		
<p>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(개시·중지·폐지·재사용)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인 (인)</p> <p>광 명 시 장 귀하</p>							
첨부서류 : 관계증빙서류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( 월)						처리기간
						즉 시
사 용 자	주 소				상 호	
	업 종	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전 화
양 수 시 설	자동모터펌프			기타		
	모터규격			HP	설치개수	대
	설치개수			대	구 경	m/m
	구 경			m/m	양수능력	m <sup>3</sup> /H
	양수능력			m <sup>3</sup> /H	기 타	
신 고 내 용	용 도					
	사 용 량	일 간	m <sup>3</sup>	월 간	m <sup>3</sup>	
비 고						
<p>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인 (인)</p> <p>광 명 시 장 귀하</p>						
<p>첨부서류 : 1. 사용량 입증서류 2. 하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입증서류</p>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						처리기간	
						즉 시	
사 용 자	주 소			업 종		상 호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		전 화	
사 용 기 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
사 용 량							
차 이 량							
하 수 배 출 량							
신 고 사 유							
<p>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고인 (인)</p> <p>광 명 시 장 귀하</p>							
첨부서류 : 하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		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서					처리기간	
					즉 시	
사 용 자	주 소				상 호	현행: 변경:
	성 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	전 화	
업 종 변 경 내 용	변경일자	년 월 일				
	변 경 전 업 종					
	변 경 후 업 종					
	변경사유					
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고인 (인)					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
첨부서류 :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						







[별지 제7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7일	
신청인	주소			상호		
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전화		
공사종별	신축, 개축, 증축, 재축, 이전, 수선, 기타(유지·보수 등)					
시공장소						
공사내용	관경( mm), 배수설비연장( m)					
건물용도						
<p>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						
광명시장 귀하						
첨부서류 : 설치장소 위치 약도 1부						



[별지 제9호 서식] <개정 2015. 12. 11>

하수도(사용료·점용료·부담금) 감면신청서						처리기간	
						3일	
신청인	주소		업종	상호			
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	전화		
감면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
감면사유							
기타							
<p>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광명시장 귀하</p>							
첨부서류 :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							

